



보험연구원
Korea Insurance
Research Institute

보 도 자 료

보도

2017. 7. 7(금) 09:00부터

배포

2017. 7. 6(목)

책임자

사회안전망연구실
정성희 실장(3775-9024)

작성자

백영화 연구위원(3775-9048)

홍보담당

변철성 수석역(3775-9115)

총 5매

제목 : 보험연구원 『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이슈와 과제』 보험CEO 및 경영인 조찬회 개최

- 보험연구원(원장: 한기정)은 7월 7일(금) 오전 7시 30분부터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44회 보험CEO 및 경영인 조찬회를 개최함
 - 이번 조찬회는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의료적·법적 이슈와 과제를 제시하여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최하였음
 - 조영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제1주제 『헬스케어서비스 도입의 의료적 필요성: 당뇨병 분야 적용 경험을 중심으로』 발표를 통해 생활습관교정요법을 통해 당뇨병 발병률을 낮춘 사례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당뇨병 관리 사례를 소개하고 헬스케어서비스를 활용한 당뇨병 예방 및 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음
 -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제2주제 『헬스케어서비스 활용의 법적 쟁점: 의료·비의료행위 중심으로』 발표를 통해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의료인이 제공할 수 있는 헬스케어서비스의 범위 및 내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·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음
-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“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는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며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에도,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높은 규제 장벽과 법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헬스케어서비스가 활발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”고 지적하고 “국민 개개인이 체계적인 헬스케어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하였음

< 제1주제 : 헬스케어서비스 도입의 의료적 필요성: 당뇨병 분야 적용 경험을 중심으로>

조영민 서울대 교수

생활습관교정 요법이 당뇨병 발병을 감소에 도움

- 우리나라에서 당뇨병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높아지고 있음
 - 현재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10%가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, 특히 60세 이상 인구에서는 20%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음
 - 우리나라 사망원인 순위에서도 당뇨병이 4~6위를 차지하고 있고, 당뇨병 진료비는 '10년 13,617억원에서 '15년 18,015억원으로 33.3% 증가하였음
 - 2017년 질병예방연구협의체의 '한국인의 질병부담 측정 및 미래예측에 관한 연구' * 에 의하면 한국인의 질병부담이 가장 높은 질환은 당뇨병으로 분석됨
 - *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313개 질환의 장애보정생존년수(DALY)를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, 한국인의 질병 부담이 높은 질환은 당뇨병, 요통, 만성폐쇄성폐질환(COPD), 허혈성 심장질환, 허혈성 뇌졸중 순으로 나타남
- 당뇨병의 발병은 환경적 요인과 관련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, 이에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당뇨병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
 - 당뇨병 고위험군인 내당능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 당뇨병 예방 연구에서, 칼로리 섭취를 줄이고 신체 활동을 늘림으로써 체중감량을 할 경우 평균 4년간 관찰하였을 때 당뇨병 발병률을 58% 낮출 수 있었음
 - 같은 연구에서 당뇨병 치료 약제를 예방적으로 투여한 경우 같은 기간 동안 당뇨병 발병률 감소 비율은 32%로, 이는 생활습관교정요법의 효과에 미치지 못하였음
 - 당뇨병 발병 고위험군*을 상대로 생활습관교정요법을 사용한다면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일 것임
 - * 가족력, 비만도, 고혈압, 고지혈증 유무 등을 파악하고 혈액검사를 통해 판단할 수 있음

신기술과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 효과적인 당뇨병 관리 서비스가 가능

- ICBM(IoT - Cloud - Big data - Mobile)의 진화는 실시간·지능형 맞춤 서비스

를 가능하게 하면서 의료서비스 분야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음

- 특히 최근에는 ICBM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, 웨어러블, 로봇 등 초연결 기술을 기반으로 의료 부문의 다양한 시도가 추진되고 있음

□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당뇨병 관리 서비스에서도 당뇨병 관리 효과가 높게 나타났음

- 3개월만에 당화혈색소* 수치가 7.7%에서 7.1%로 감소하였으며, 공복혈당도 141 mg/dL에서 120 mg/dL로 감소하였음

* 최근 3개월 간의 혈당 조절을 나타내는 지표로서, 정상은 당화혈색소 수치가 5.7% 미만이며 6.5%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함

- 연구 시작 당시 혈당이 높았던 사람에서 혈당 감소 효과가 더욱 컸음
- 또한 해당 스마트폰 앱을 자주 이용할수록 혈당 감소 효과가 크고, 당뇨병 자가관리 점수가 높게 나타났음

□ 헬스케어서비스를 활용한 당뇨병 예방 및 관리 활성화는 국민 보건 및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임

< 제2주제 : 헬스케어서비스 활용의 법적 쟁점: 의료·비의료행위 중심으로>

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

비의료인이 제공할 수 있는 헬스케어서비스의 범위가 불명확

□ 비의료인이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‘의료행위’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존재함

-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
-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, 대법원 판례* 및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서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음

*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의료행위라 함은 “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, 검안, 처방,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”를 의미함(대법원 2012. 5. 10. 선고 2010도5964 판결 등)

- 대법원 판례에서는 건강 상태, 질병의 유무 등을 규명·판단한 행위에 대해 의료행위로 보고 있음
- 특히 보건복지부는 가정용 측정기 등 평소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한 혈압, 혈당, 지방 측정 행위에 대해서도 의료행위로 판단한 사례가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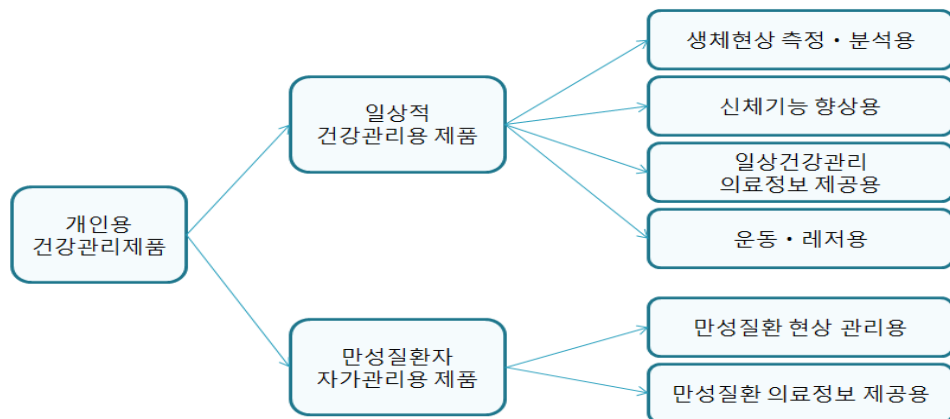
□ 현재 대법원 판례 및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, 비의료인이 제공하고자 하는 헬스케어서비스 유형* 중 의료행위 해당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음

* 2010년 및 2011년에 발의되었던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의하면 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음: ①건강위험도 평가 결과 및 건강상태에 관한 상담, ②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한 교육, ③영양·운동 등에 관한 지원·지도 및 훈련, ④건강에 관한 정보 제공, ⑤건강상태의 지속적 점검 및 관찰

-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 및 건강상태에 관한 상담, 영양·운동 등에 관한 지원·지도 및 훈련, 건강상태의 지속적 점검 및 관찰 과정에서 개인의 건강 상태나 질병 유무에 대한 판단 행위가 개입된다고 판단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을 것임

소비자 인식 및 사회통념을 감안한, 비의료행위 기준 마련 필요

-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, ‘반드시 의료인이 행해야 할 의료행위’와 ‘비의료인도 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행위’의 구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제거 또는 경감시킬 필요가 있음
 - 현재 대법원 판례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비추어보면, 상식적으로 보아 반드시 의료인이 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되는 행위의 경우에도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상황임
 - 그러나 의료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만 보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
 - 시대 상황의 변화, 소비자의 인식과 필요, 사회통념을 감안하여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구분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
- 특히,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이미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의 구분 기준이 마련되었으며, 해당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
 -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. 7. 10. 「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(웰니스) 제품 판단기준」을 제정하였음
 - 일상적 건강관리용과 만성질환자 자가관리용*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도가 낮은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은 비의료기기로 봄



* 만성질환과 관련된 경우에도 건강한 생활습관의 선택이 건강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전문가 보고서 등을 통해 일반적·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 그러한 생활습관을 유도하는 만성질환자 자가관리용 제품은 비의료기기로 인정

- ‘의료기기’와 ‘비의료기기로서의 개인용 건강관리제품’의 구분이 가능하다면, ‘의료행위’와 ‘비의료행위로서의 건강관리행위’의 구분도 시도해볼 수 있을 것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kiri.or.kr>